교수현장학기제 운영 규정(3-5-24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전임교원(이하 "교수"라 한다)이 학교를 떠나 산업현장 및 교육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새로운 기술 및 산업동향 파악, 교수의 자기계 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수 현장학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격 및 기간) ① 본 대학교의 교수로서 1년 이상 근무한자로 본인의 희망 또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.
 - 1. 단기제(유형 1) : 2주 이상 ~ 4주 미만
 - 2. 단기제(유형 2) : 4주 이상 ~ 8주 미만
 - 3. 학기제 : 학기 중 소정(8주 이상 ~ 24주 미만)의 기간(국ㆍ내외)
 - ② 단기제(유형 1, 2)의 경우에는 학년도 범위 내에서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 - ③ 본 대학교 교수는 임용 후 1년 이후부터 3년에 1회 이상 제 1항의 유형에 따라 교수 현장학기 제에 1회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장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3조(인원의 제한) ① 학기 중에 교수 현장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과별로 2인 이상 참여할수 없으며, 국내의 경우에는 학부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 1회 등교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방학 중 현장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4조(신청절차 및 선정) ① 교수 현장학기제를 희망하는 교수는 교수 현장학기제 이수신청서<별지 서식 제1호 및 제3호>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 - ②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(단기제의 경우 예외)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 현장학기제 시작 3개월(단기제의 경우 1개월) 전까지 선정 결과를 신청인 및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현장기관 및 업체) 교수 현장학기제 기관은 본 대학교의 가족회사, 전문기업인 교수 참여 기업 등 국내·외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 - 1. 중소기업 기본법,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
 - 2.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 - 3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 - 4. 기타 교수 현장학기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·외 업체 또는 기관
- 제6조(경비지원) 교수 현장학기제에 참여하는 교수에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준수사항) 현장기관 및 업체로 파견된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총장의 허가 없이 현장기관 및 업체, 파견목적, 기간,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없다.
 - 2. 학기제의 경우에는 현장학기 참여기간 중 2분의 1의 기간 경과 후 1주 이내에 교수 현장학기제 중간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3. 현장기관 및 업체에 파견된 기간 동안 본 대학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추락시켜서는 아니 된다.

- 4. 현장기관 및 업체의 파견기간이 끝나는 즉시 본 대학교에 복귀 하여야 한다.
- 5. 현장기관 및 업체에 파견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수 현장학기제 이수 결과보고서<별 지서식 제2호>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징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1. 전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2. 현장기관 및 업체의 내규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3. 고의적으로 현장기관 및 업체의 기밀을 누설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「학칙」및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규정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행한 교수 현장학기제는 이 규정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교수 현장학기제 이수 신청서

결	담당	팀장	처장	부총장	총장
재					

소 속		직급		성	명	
분 야	□ 단기	제(유형1) 🗆	단기제(유형2)	□ 학기제(국	·내) □ 학기제(국외)
연수기관				연수지		
연수기관 연 락 처	담당부서 및 담당자			연락처		
연수기간 (시간)		일 ~ 년 (총 시간)	월 일	교육비		
연수목적						
연수내용						
기대효과						
「교수현장학기제 운영규정」제4조(신청절차 및 선정) 및 제7조(준수사항)에 의거 위와 같이 교수 현장학기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			20			
	신청자 소속	<u> </u>	직급	성명	(인)	
	확인자 소속	ì	직위 학과장	성명	(인)	

건양대학교 총장 귀하

교수 현장학기제 이수 결과보고서

결	담당	팀장	처장	부총장	총장
재					

소 속	직 위		성 명		
분 야	□ 단기제(유형1) □ 딘	ŀ기제(유형2) □ 학기	기제(국내)	□ 학기제(국외)	
현장학기 이수내용					
기대효과					
교육연계방안 및 개선사항					
「교수현장학기제 운영규정」제7조(준수사항)에 의거 위와 같이					
교수 현장학기제 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
	20	0			
	신청자 소속 직	급 성명		(인)	
	확인자 소속 직	위 학과장 성명		(인)	

건양대학교 총장 귀하

교수 현장학기제 연수기관 소개서